

체외충격파 치료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안내문

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-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발송되었습니다.

대한의사협회는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('26.6.17) 논의를 거쳐 <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>을 마련하였으며,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총 12회 시행(부위당 6회, 주 1회), 적응증은 1-어깨관절(석회성 건염/회전근개 건변증), 2-팔꿈치 관절(외측상과염/내측상과염), 3-고관절(대전자 통증 증후군), 4-슬관절(슬개건염), 5-발목관절(아킬레스건염), 6-족부(족저근막염), 7-척추부(경추·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)로 제한됩니다.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, 치료 부위의 종양(악성 또는 양성 포함), 감염 조직, 임신, 급성 골절·파열(예 : 회전근개 파열, 아킬레스건 파열 등),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, 금속 고정물 주위, 폐조직, 뇌, 척수부위는 치료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. 동일 회차 내 다수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1개 부위 치료에 대한 의료비만 보상되며 연간 산정기준은 가이드라인 시행('26.7.1) 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는 날부터 기간(1년)을 계산합니다.

*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링크 :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90900&tag=&nPage=1

이에 따라, 하나손해보험은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<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>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'26.7.1부터 <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>을 초과하여 시행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고객님께서 예상하신 보험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금 청구/지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나손해보험 상담센터(1566-3000)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